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UNCITRAL에서 싱가포르로

중재-조정-중재(Arb-Med-Arb)가 절차적 장치로 메웠던 공백을 직접 해소하려면 조약이 필요했습니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는 2018년 6월 25일 국제 조정 화해합의의 집행에 관한 협약 문안을 확정했습니다.[1] 유엔 총회는 2018년 12월 20일 결의 73/198로 조정에 의한 국제 화해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을 채택하고, 이를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으로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2] 이 명칭은 싱가포르 대표단이 협상에서 수행한 역할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2019년 8월 7일의 서명식은 외교적 성공이었습니다. 첫날에만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46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싱가포르는 2020년 2월 25일 피지와 같은 날 비준서를 기탁했습니다. 2020년 3월 12일 카타르가 뒤따르면서 발효에 필요한 세 건의 비준이 완료되었습니다. 협약은 6개월 뒤인 2020년 9월 12일 발효되었습니다.[3]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협약의 작동 방식

협약은 조정에서 비롯되어 국제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서면 화해합의에 적용됩니다. 소비자가 개인, 가족 또는 가사 목적으로 체결한 합의와 가족법, 상속법 또는 노동법상의 합의는 제외됩니다. 이미 판결이나 중재판정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화해도 제외되므로, 협약은 뉴욕협약, 2005년 헤이그 관할합의협약(Hague Choice of Court Convention) 및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Hague Judgments Convention)과 중복되지 않습니다.[4] 따라서 소송-조정-소송(Lit-Med-Lit) 프로토콜에 따라 체결되어 법원 명령으로 기록된 화해는 협약의 적용 범위 밖에 있고, 독립적인 조정에서 이루어진 화해는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협약의 각 당사국은 적용 대상 화해합의를 자국의 절차 규칙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화해로 해결된 사항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가 화해를 항변으로 원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화해에 의거하는 당사자는 서명된 합의서와 그 합의가 조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증거, 예컨대 조정인의 서명이나 조정을 관리한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약에는 중재지(seat) 개념이 없습니다. 중재지의 법질서에 속하는 중재판정과 달리, 조정에 의한 화해는 조정지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 구제를 구하는 국가에서 직접 집행됩니다.[5]

거부 사유는 제한적이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화해 당사자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화해합의 자체의 유효성과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는 조정의 진행, 특히 조정인이 준수해야 했던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집행법원은 또한 집행이 공서에 반하거나 그 대상이 자국 법상 조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직권으로 구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6]

각국은 제8조에 따라 두 가지 유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국 또는 정부기관이 당사자인 화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 당사자들이 협약의 적용에 합의한 경우에만 협약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 조지아, 이스라엘, 일본,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당사국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이 이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활용했습니다.[7] 두 번째 유보는 해당 국가에서 협약을 옵트인 체제로 바꿉니다. 따라서 일본이나 아랍에미리트에서 집행해야 할 화해합의에는 싱가포르 협약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당사국의 범위

협약은 지지자들의 기대보다 느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UNCITRAL 현황표에는 25개 당사국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8] 그중 모리셔스,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3개국에 대해서는 협약이 2027년에야 발효되므로, 2026년 11월 현재 협약이 발효된 국가는 22개국이었습니다. 초기 당사국은 피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벨라루스, 에콰도르, 온두라스, 조지아, 튀르키예, 카자흐스탄처럼 소국이거나 걸프,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었습니다. 2023년 일본의 가입으로 싱가포르 자신에 이어 처음으로 아시아의 주요 경제국이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 바레인,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브라질, 키르기스스탄이 2025년에 가입했고, 2026년에는 콜롬비아, 오만, 모리셔스, 우즈베키스탄이 뒤따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6년 10월 8일 가입했으며 2027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싱가포르 국제분쟁해결아카데미(Singapore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Academy)가 운영하는 협약 공식 웹사이트는 서명국을 60개국으로 집계했습니다.[9]

최대 무역 경제국들은 여전히 협약 밖에 있습니다. 유럽연합, 영국, 스위스, 인도, 홍콩은 당사국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은 2019년에 서명했으나 2026년 11월까지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실무가에게 이는 오늘날 협약이 걸프,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일본의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가장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유럽 또는 미국 당사자와의 분쟁에서는 화해중재판정이나 프로토콜에 따라 기록된 법원 명령이 여전히 더 안전한 집행 경로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싱가포르에서의 이행

싱가포르는 2020년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법(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Act 2020)으로 협약을 이행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당사자는 협약이 적용되는 화해합의를 법원 명령으로 기록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후 이를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습니다.[10] 국내 조정 화해에는 이미 2017년 조정법(Mediation Act 2017)에 따른 유사한 경로가 있었습니다. 이 법은 지정된 제공기관이 관리하는 조정의 당사자들이 화해를 법원 명령으로 기록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11] 두 법률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화해에 국내에서의 직접적인 집행 경로를 제공하고, 협약은 해외로의 경로를 제공합니다.

협약은 연례 행사로도 기념됩니다. 2019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협약 주간(Singapore Convention Week)은 2026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국제 분쟁해결 공동체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2026년 행사 기간 중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가 싱가포르 사무소를 열었습니다.[12] 제F편 제V장에서 살펴보는 세계은행 투자분쟁센터의 진출은 싱가포르가 국가와 기업이 분쟁을 해결하는 아시아의 장소라는 주장을 강화합니다.

주

1. Wikipedia,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18년 6월 25일 UNCITRAL이 문안 확정; 2019년 8월 7일 싱가포르에서 서명 개방, 첫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46개국이 서명; 2020년 3월 12일 카타르의 세 번째 비준서 기탁으로부터 6개월 후인 2020년 9월 12일 발효. ↩

2. UNCITRAL,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New York, 2018)”, uncitral.un.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18년 12월 20일 총회 결의 73/198로 채택; 2019년 8월 7일 싱가포르에서 서명 개방.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3. UNCITRAL, “Statu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uncitral.un.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0년 2월 25일 싱가포르와 피지, 2020년 3월 12일 카타르 비준; 3개국 모두에 대해 2020년 9월 12일 발효. ↩

4. UNCITRAL, 협약 페이지 (uncitral.un.org): 제1조에 따른 적용 범위는 상사분쟁의 조정에서 비롯된 서면 화해합의로 한정; 뉴욕협약, 2005년 관할합의협약 및 2019년 재판협약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 가족, 상속 및 고용 사항과 판결 또는 중재판정으로 집행 가능한 화해합의는 제외; 제3조 화해를 집행하고 원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 제4조 서명된 화해합의 및 조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증거의 요건. ↩

5. 싱가포르 협약에 중재지 또는 원산국 요건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Nadja Alexander and Shouyu Chong,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A Commentary*, Alphen aan den Rij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9 참조. ↩

6. UNCITRAL, 협약 페이지 (uncitral.un.org): 제5조에 따른 거부 사유는 당사자, 화해합의 및 조정 절차에 관한 것으로 분류; 공서 또는 대상이 조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직권 거부. ↩

7. UNCITRAL, 협약 페이지 및 현황표 (uncitral.un.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국가 또는 정부기관이 관련된 화해, 그리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에 관한 제8조의 유보; 제8조 제1항 (a)호에 해당하는 현황표 주 (b)는 벨라루스, 브라질, 조지아,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및 우즈베키스탄; 제8조 제1항 (b)호에 해당하는 주 (c)는 조지아, 이스라엘,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랍에미리트 및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은 서명 시 두 선언을 모두 함. ↩

8. UNCITRAL, 현황표 (uncitral.un.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5개 당사국으로, 바레인(2025년 2월 17일 가입), 브라질(2025년 8월 6일 비준, 2026년 2월 6일 발효), 콜롬비아(2026년 3월 12일, 2026년 9월 12일 발효), 일본(2023년 10월 1일 가입, 2024년 4월 1일 발효), 모리셔스(2026년 8월 17일, 2027년 2월 17일 발효), 나이지리아, 오만(2026년 3월 10일 가입, 2026년 9월 10일 발효), 스리랑카,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2026년 10월 8일 가입,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2027년 4월 8일 발효), 우루과이 및 우즈베키스탄(2026년 8월 28일 가입, 2027년 2월 28일 발효) 포함. ↩

9.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웹사이트 (singaporeconvention.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서명국 60개국 및 체약 당사국 25개국;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싱가포르경영대학교(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의 싱가포르 국제분쟁해결아카데미(SIDRA)가 운영. UNCITRAL 현황표에 따른 가입일: 이스라엘 2025년 1월 8일, 바레인 2025년 2월 17일, 파라과이 2025년 3월 12일, 코스타리카 2025년 3월 25일, 브라질 2025년 8월 6일, 키르기스스탄 2025년 12월 1일, 오만 2026년 3월 10일, 콜롬비아 2026년 3월 12일, 모리셔스 2026년 8월 17일(2027년 2월 17일 발효), 우즈베키스탄 2026년 8월 28일(2027년 2월 28일 발효), 아랍에미리트 2026년 10월 8일(2027년 4월 8일 발효). ↩

10.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Act 2020, 2020년 2월 의회 통과, 2020년 9월 12일 협약과 함께 시행. ↩

11. Mediation Act 2017 (싱가포르), 조정 화해합의의 법원 명령으로의 기록에 관하여. ↩

12. SIMC, “A week in conversation – SIMC at SC Week 2026”, simc.com.sg, 2026년 9월 15일: 2026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 협약 주간 개최, 2026년 8월 26일 에드윈 통 SC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ICSID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 singaporeconvention.or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이 주간 행사는 2019년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됨.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